

## 사회국가의 위대함과 시련\*

알랭 쉬피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취임 강연

2012년 11월 29일

박 제 성(역자)\*\*\*

---

\*Alain Supiot, *Grandeur et misère de l'État social*, Paris, Collège de France/Fayard, collection "Leçons inaugurales du Collège de France", mai 2013.

\*\*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Bordeaux) 대학에서 『판사와 노동법(Le juge et le droit du travail)』으로 국가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푸아티에(Poitier) 대학과 낭트(Nantes) 대학을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선출되었다. 1993년에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낭트인간학연구소(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Ange-Guépin)를 설립하였고, 2008년에는 다양한 사회의 교의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낭트고등과학연구원(Institut d'études avancées de Nantes)을 설립하고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하였다. 쉬피오의 연구는 법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의 교의적 기초에 관한 분석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제도』(Les juridictions du travail, Paris, Dalloz, 1987), 『노동법』(Droit du travail, Paris, Dalloz, 1994-2008),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 Paris, PUF, 1994),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경제주의에 맞서는 사회적 정의』(L'esprit de Philadelphie :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é total, Paris, Seuil, 2010) 등이 있으며, 1999년에는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 『고용을 넘어』(Au-delà de l'emploi, Paris, Flammarion, 1999) 프로젝트를 총괄한 바 있다.

\*\*\*朴濟晟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eseongpark@kli.re.kr)

## 1. 사회법의 의미<sup>1)</sup>

총리님,  
총장님,  
동료 교수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1612년부터 1919년까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법학 강의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르네 장 뒤퓔(René-Jean Dupuy) 교수가 <국제법(Droit international)>을 강의하면서 재개되었고, 그 뒤 미레이유 델마스 마르티(Mireille Delmas-Marty) 교수가 <비교법 및 법의 국제화(Etudes juridiques comparatives et internationalisation du droit)>라는 강좌를 맡았습니다. 교수 회의에서 제게 맡긴 것은 바로 이러한 긴 전통을 계속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동료 교수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이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제가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산의 정상에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라고 칼릴 지브란(Khalil Gibran)이 제 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저는 시인의 경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들이 진수하는 강좌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되었던 법학의 세 가지 큰 분야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좌는 비록 그 서로 다른 세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법도 아니고 국제법도 아니며 비교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법(droit social)’이라고 부르는 매우 탄력적인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탄생한 잡다한 규칙들의 깊은 숲 같은 법, 오늘날에는 쇠퇴를 면할 수 없다고 일부 논자들이 부르짖는 바로 그 법입니다. 그들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

1) 이하 모든 소제목은 원문에는 없는 것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역자가 임의로 붙였음을 밝혀 둔다.

사회국가는 인류연대의 긴 역사 속에서 한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국가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형식들은 분명하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사회정의는 이미 한물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틀린 것입니다. 학자로서의 저의 첫 걸음을 인도했던 카르보니에(Jean Carbonni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단 하나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법이며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어휘로 말하자면 사회법이다.”

프랑수아 에발드(François Ewald)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사회국가는 19-20세기의 전환점에 서양의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법적 전환점에 관한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예리한 통찰들 가운데 하나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였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모든 직업 경력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1887년에 도입한 노동재해법을 실행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카프카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대조적인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의 영혼은 톱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게다가 그 톱밥은 수천 개의 입들이 나를 위해 이미 씹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야말로 제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2년 후인 1908년에 카프카는 보헤미아왕국 노동자재해보험국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방문하고, 일을 하다 손발이 잘린 사람들을 접견하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관료들과 싸우면서, 카프카는 매일매일 부정의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카프카로 하여금 1887년 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법학 논문들을 쓰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 작품들 속에도 강력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Max Brod)는 카프카는 노동자들이 안전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가 절단된 모습을 보면 사회적 연대의 감정이 격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하루는 카프카가 브로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손한 사람들일세. 공장으로 몰려가 약탈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와서 청원한다네.”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새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에 관한 카프카의 통찰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재해보상금은 공장에서 나오는 인간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골 사람들이 성 안의 나리들께 복종하는 것이 뿌리깊은 만큼, 약자들이 강자 앞에서 체념하는 한숨이 깊은 만큼, 딱 그 만큼 공정하게 매겨진 가격이었습니다. 카프카의 일화에서 우리는 또한 사회법의 역할, 지나친 부정의가 맹목적인 ‘약탈’의 욕망을 분출시키지 않도록 사회법이 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광란의 학살은 대규모 빈곤의 책임을 일부 희생양에게 전가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증오, 민족적 증오, 인종적 증오, 계급적 증오 또는 종교적 증오 등을 살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일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9년 국제노동기구 현장에서, 그리고 이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두 번씩이나 국제 사회는 이 학살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사회정의 없이는 평화도 유지될 수 없다.”

부정이는 폭력을 배양한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이 어려움은 이론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움 두 가지인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철저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정의에 있어서, 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사자의 뿔을 차지할 힘이 있는 자들을 설득하여 평등과 정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평등과 정의를 쟁취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약자들이며, 지배계급은 그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사태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재화와 지위의 정의로운 배분에 관한 규칙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낡고 그릇된 생물학적 은유와는 달리, 인간 사회의 규율은 유기체의 규율과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르주

장길렘(Georges Canguilhem)이 갈파한 것처럼 의학에서는 무엇이 선(善)인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의 정체와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사회에서는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 거짓말, 폭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유기체의 행위규범은 그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는 반면에, 어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규범을 사회의 외부에 마련해야 합니다.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근본규범의 이러한 외재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형식적인 법이론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법을 추동하는 가치와 법이 다스리는 사태들 앞에서 맹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관찰 속에서 당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이상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곤경은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실증주의적 억압에서 유래합니다. 그것은 피에르 르장드르(Pierre Legendre)가 명징하게 분석한 바와 같이, 서양의 근대가 그 자신의 교의적 기초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르장드르의 분석은 법사상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에서나 비서양에서나 인간과 사회의 제도는 논증할 수 없는 전제들, 계산이 아니라 신탁의 영역에 속하는 전제들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의 교의적 공간(espaces dogmatiques industriels)’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최대한의 교훈을 끌어 내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없이는 지구화(globalisation)의 제도적 토대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저에게 결정적인 것이었으며, 그 저자와 맺은 자식 같은 우정 관계와 함께 저의 학문 경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친애하는 피에르 르장드르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진 빚은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앞으로도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지

금 이 자리에서 그 빛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정의를 법의 어머니로 묘사하는 오래된 은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란 부모를 잃어버린 인간성이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머니의 존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심판』의 원고 가운데 생전에 발표한 유일한 원고에서 첫 번째 법의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말로 표현하자면, 법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관문들이 우리가 법에 다가가는 것을 끊임없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마치 해마다 추가되는 무한한 일련의 공리들이 형식적 체계로 하여금 환원불가능한 비계산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 이래로 법의 정신은 각각의 사회가 속해 있는 풍토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같은 풍토에서도 서로 다른 당위의 표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법질서를 정초할 수 없습니다. 법질서가 터잡고 있는 원리들은 천명되고, 찬양되는 것이지, 논증되거나 논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질서를 정초(定礎)하는 일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그토록 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이 법질서 정초 작업이 종교적이거나 혹은 다시 종교화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입법자는 가령 이란 헌법이 “법률의 선포에서 신의 계시가 하는 근본적 역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표방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법의 원천이 헤아릴 수 없는 신의 뜻에 맡겨져 있지는 않은 나라들에서도, 종교경전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을 자연과학의 경전에서 읽으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법칙들, 역사법칙들, 경제법칙들이 그렇게 인간사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궁극적 법칙이자 실정법이 따라야 할 최고의 명령으로서 언급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차대전 이전에 미국과 북유럽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우생학적인 입법이나 인종차별주의 입법이

생물학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던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혼인에 힘입어 경제학이 율칙(律則)의 어머니로 등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간 유전자 속에서 평등원칙의 증거를 찾았다고 신실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도 있지만, 이는 이차대전 이후에 천명된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은 생물학적 사실의 표상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경제학을 하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엄격한 로제 게스느리(Roger Guesnerie) 교수님은 교수 취임 강연에서 경제학적 논점들의 사회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인간학을 교차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상상의 세계에 대한 비의적 사고”와 “소여에 대한 경솔한 취급”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게스느리 교수님께서 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이루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저에게 용기를 주신 콜레주 드 프랑스의 동료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져 본 적이 없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영광스러운 전당의 문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레이유 델마스 마르티 교수님께 특별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수님의 관대한 인격과 부드러운 단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 국제화에 관한 교수님의 선구자적인 연구에 대해서 다른 독자들과 함께 제가 공유하는 학문적 부채에 더하여 사려 깊은 격려와 충고를 고맙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로제 샤흐티에(Roger Chartier) 교수님과 장 노엘 로베르(Jean-Noël Robert)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우정 어린 지지는 저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안 쉹(Anne Cheng) 교수님, 피에르 에티엔느 빌(Pierre-Etienne Will) 교수님, 마르크 폰트카브(Marc Fontecave) 교수님 그리고 필립 쿠릴스키(Philippe Kourilsky)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국가와 세계화 :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Etat social et

mondialisation : analyse juridique des solidarités)>이라는 강좌의 이름은 목적과 방법론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름이 좀 긴 까닭은 이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그 방법론이 특정한 법 분야로 인정되는 확실한 경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며, 법을 확립된 규칙 체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분석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국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연대의 기반과, 이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폄하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의 작용, 둘 다입니다. 이 힘과 그것이 가져올 충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국가를 짓누르는 시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회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위대함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 2. 사회국가의 위대함

그럼 우선 사회국가의 위대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묶어서 ‘사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법에만 국한해서는 사회국가의 위대함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법은 조르주 기르비치(Georges Gurvitch)가 1932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개했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법에 속하는 원리들의 일부분밖에 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법이나 교육법 또는 주택법과 같이 사회국가의 구성에 관여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공법에 속하는 많은 제도들이 제외될 것입니다.

사회국가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지, 단순히 실정법의 구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헌법 제1조는 프랑스를 “불가분이고,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러시아연방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자유로운 발전

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사회국가”로, 터키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법치국가”로, 알제리공화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원리 위에 기초한 국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도나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들의 헌법도 사회정의를 국가법질서의 주된 기초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를 ‘사회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사회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 속에 이 사회국가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에른스트 칸트로비치(Ernst Kantorowicz)와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 그리고 피에르 르장드르의 작업에 힘입어 우리는 국가가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적 형태가 아니라 11-12세기 교회법학자들의 발명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 있는 어떤 미신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신은 근대가 고대 그리스-로마의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믿으며 근대를 탄생시킨 중세라는 혼성사회를 슬쩍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불멸의 국가라는 생각은 신비로운 신체라는 생각에서 기원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천사의 형상에 따라 발명된 불멸의 국가는 그 탄생 이후 세 가지 변용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주권 개념을 탄생시키긴 했지만, 일체의 종교적 의거(依據)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혁명을 통해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 사이의 균형은 사라졌으며, 국가는 권력의 분립을 통해 전지전능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변형은 산업자본주의 및 과학적 실증주의의 대두와 함께 단순한 통치 수단 또는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이 전지전능한 국가의 정당성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사회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인류학을 통해 좀 에둘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앙드레 르루아 구랑(André Leroi-Gourhan)은 인간이

라는 영장류는 도구의 사용과 언어의 획득을 통해 인간의 물리적 존재조건인 상징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인간의 조건에 관한 안정적인 소여인 반면에, 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는 더 이상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가 “중간신체”라고 부르는 것, 즉 기술 속에서 외부화되고 인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신체의 안정성과 (생물학적 신체의 변형은 지질학적 시대의 차원에 위치합니다) 세대 교체의 흐름에 관련된 도구의 변화 사이에 점증하는 분리에 직면해야 합니다. 르루아 구랑에 의하면, “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불가피하다. 적응은 단순히 기술적 습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 변화의 시기마다 개인의 집단에 관한 법칙을 재주조한다. (...)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인류의 종도 조금씩 바뀐다.”

사회국가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변화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은 일 세기 만에 인간의 노동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우선 기술적 변화입니다. 현저하게 증가한 증기기관의 힘은 노동자들을 새로운 신체적 위험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변화는 또한 법률적 변화입니다. 노동을 인간의 인격에서 분리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노무임대차 계약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은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계급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재생산은 위협에 처했습니다. 사회법은 말하자면 기술을 인간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사회법은 인간의 긴 생애 동안 건강과 신체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길들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법은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착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법의 발달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개념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기계의 모델을 국가에 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인간사회의 과학적 법칙이라는 미명 아래 행동하는 유일정당의 손에 장악된 단순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의 정당성을 새로운 기초 위에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는 단순히 사람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거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육화(肉化)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봉사자가 되었으며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각 나라의 맥락에 따라 *État-providence*, *Welfare State*, *Sozialstaat* 또는 *République sociale* 등으로 불립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사회국가(*État social*)’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에 포섭됩니다. 사회국가를 20세기의 위대한 제도적 발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법질서를 수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도의 정밀한 기계 장치와도 같은 채권법 속에 삶의 신체적 차원과 세대간 계승의 차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노동은 노동하는 자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본주의가 대두하기 전까지는 노동에 관한 법제는 언제나 노동하는 자의 인격적 지위에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노동이 계약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여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로크(*John Locke*)는 스스로에 대한 소유라는 개념에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에서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것은 과학에서 인간의 신체를 순수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상응합니다. 모리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이러한 대상화는 각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갖는 경험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스스로와 맺는 관계에 관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와 관련됩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충고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몸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누가 그 입으로 말하는가?’”

그러므로 실제의 노동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분리는 물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컨대 노동을 계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의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예제가 하나의 예입니다. 노예제는 노동자를 마치 주체가 아니라 임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마치 계약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노무임대차도 그러한 법적 의제의 또 다른 예입니다. 노무임대차에서는 노동을 이용하는 자는 노동자를 그 전 생애 동안 돌보아야 할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그러한 법적 의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은 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무임대차의 계약적 범주 속에 노동자의 신체적 경제적 생존을 보호하는 일종의 신분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계약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임금노동에 관한 신분을 의미하는 노동계약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비계약적 교환 형태들이 다시금 법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전 세대에 대한 삶의 부채를 제도화하는 부가식 연금 제도에 의하여 설정되는 세대간 연대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간의 존엄성 원칙을 승인하는 기원에 사회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간의 존엄성을 승인한다는 것은 인권의 범주 속에 인간의 신체적 필요를 재편입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사회국가의 두 번째 중요한 공헌은 사법관계의 수평적 차원과도 다르고 공법관계의 수직적 차원과도 다른 새로운 차원을 법질서에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자기결정의 차원입니다. 이 집단적 차원의 승인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과 갈등 그리고 타협으로부터 법규칙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직접 제정하는 대신,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규칙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정의는 재화와 지위의 안정적 분배를 정당화하는, 개념의 하늘에 매달려 있는 어떤 이상이 아니라, 행위

를 위한 지평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미 『학설휘찬』의 유명한 구절에 나타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돌려 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의 목적이며,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모든 국내와 국제 정책의 핵심 목적”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회국가는 이 항구적인 운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법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적 대표와 단체교섭 제도를 마련하며, 이 제도들은 갈등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새로운 규칙으로 전환시킵니다. 이처럼 법의 형성 과정에서 집단적 권리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국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며, 반대로 그러한 권리들을 부정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경찰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파시스트 국가 혹은 조합주의적 독재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사회국가의 발명은 법학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으며, 새롭게 태동하는 사회과학들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회과학 또한 사회의 공정한 조직에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콜레쥬 드 프랑스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노동의 역사, 사회보장 혹은 협동조합의 교훈 등에 관한 다양한 강좌를 창설함으로써 이러한 과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법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국가의 성립은 보통법 전통과 대륙법 전통 양자 모두에게서 끌어 온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신의 고유한 모델을 버리는 방식으로 사회국가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습니다.

독일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은 독일의 산업 발전 단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독일의 고유한 법문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 당시, 칼뱅주의 법학자인 알투스우스(Althusius, 1557-1638)는 법주체를 국가에 의하여 육화되는 정치 공동체에 포함되는 다양한 직업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등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을 옹호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19세기에 오토 폰 기에르크(Otto von Gierke)에 의하여 발전되며, 가부장적 해석과 권위주의적 해석 그리고 민주주의적 해석 사이를 동요하는 독일식 사회모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부장주의적 해석은 독일의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도

입하였던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휴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는 민주주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이미 1910년에 현대적 노동법의 기초를 확립한 유명한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집단차지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확립한 위대한 법학자인 진쯔하이머는, 1933년부터 죽을 때까지 나치를 피해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라는 개념적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개념은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일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노동법의 이론적 기초를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면, 반대로 현대 사회국가의 두 번째 기둥인 보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도입은 영국에서 고안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노동법을 개념화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최초로 이 작업에 매달린 사람은 역시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던, 진쯔하이머의 제자 오토 칸 프로인트(Otto Kahn-Freund)였습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선구자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영국인들은 ‘산업관계(relations industrielles)’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노동시장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언제나 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영국인들은 시장경제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저로 노동시장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보편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고안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이론이 확립되었는데, 이것이 사회국가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레옹 뒤기(Léon Duguit)입니다. 에밀 뒤르캄(Emile Durkheim)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뒤기는 사회적 연대를 통치자도 구속하는 하나의 객관적 규범으로 바라보았으며, 국가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는 국가의 정당성 근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권이 제한되는 기준으로서도 작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엘리트 봉사자라고 하는, 40여년 전에 피에르 르장드

르가 『행정의 역사(Histoire de l'administration)』라는 책에서 분석하였던 ‘국가귀족(noblesse d'Etat)’이라는 프랑스적 전통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프랑스 사회모델의 한 가지 특징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사법의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공과 사를 섞는 기법은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의사단체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이러한 공사의 혼성이 발견됩니다. 노동법에서는 또한 사회적 공서 및 입법교섭이라는 개념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공사의 혼성은 제도적 번식력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자산이 사익을 위하여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과 공법과 인문학을 나누어 놓고 있는 대학의 편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사회국가를 진지하게 탐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38년에 『사회법(Droit social)』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했던 세 명의 법학자들이 저지르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세 명은 피에르 앙리 테장(Pierre-Henri Teitgen), 프랑수아 드 망통(François de Menthon) 그리고 폴 뒤랑(Pau Durand)입니다. 실정법에 관한 저의 작업은 이러한 지적 전통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지적 전통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라르 리옹 캉(Gérard Lyon-Caen) 교수와 장 자크 뒤페루(Jean-Jacques Dupeyroux) 교수입니다. 리옹 캉 교수는 위대한 노동법 학자였으며 언제나 저를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옹 캉 교수에 대한 저의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뒤페루 교수는 사회보장법의 혁명적 성격을 간파하였으며 사회보장법에 결여되어 있었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 3. 사회국가의 시련

사회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사회국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임감의 크기, 사회국가가 재분배하는 막대한 자원의 크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에 사회국가가 가져 온 변화들의 크기. 그러나 항의를 용인하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에 화답하는 이 온후한 주권은 오늘날 시련에 직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무역국경의 개방에 의하여 사회와 조세 관련 최저가 입찰의 경쟁 및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자원은 감소하는데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편적 채무자가 된 국가는 채권자로서의 국민을 만들어 내었으며, 이 채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상호연대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국가가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성질 급한 의사들은 국가가 누워 있는 침대로 물러듭니다. 어떤 자들은 국가의 고혈을 짜내고, 반면에 어떤 자들은, 종종 같은 자들이기도 한데, 벌써 국가의 사망진단서를 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의술이 아니라 사회국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법학적 분석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적 분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법학적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droit)’이라는 말의 어원이 가리키는 것처럼, 법은 한 사회가 스스로 정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 작센인의 거울이라는 뜻)’이라는 중세의 은유 곧 거울 같은 법의 은유처럼, 법은 한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나아갈 방향도, 그 이상적인 모습도 현실의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제의 지속 가능성은 그 사회의 구체적 존재 조건과 그 사회를 특징짓는 규범적 이상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존재와 당위를 연결하고, 그 양자가 상호 지지하는 역동성을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천에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 사

회가 꿈 꾸는 것, 사회가 두려워하는 것 들이 동시에 물들어 있습니다. 즉, 사회가 행위하도록 만드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학적 분석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의 세계에 간혀서도 안 되고, 가치의 하늘에 간혀서도 안 되며, 형식의 세상에 간혀서도 안 됩니다. 즉, 법학적 분석은 객관성과 자급자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13세기의 이탈리아 법학자 아쿠르시우스(Accursius)는 “법에 전부 다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자기 전공에 매몰되는 것은 법학자들이 일등인데, 일부 사회과학에서도 이를 배워 자기 전공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우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법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축소하는 사회학적 환원이나, 법을 효율적 자원 분배의 도구로 축소하는 경제학적 환원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모든 학문 전공에서 이러한 헤게모니의 유혹에 양보하지 않는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방법론에 따라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좀 더 나은 인식을 위해서 연구하는 데 만족하고 맙니다. 법학적 분석은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학문 분야도 홀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각자 조금씩 기여할 뿐이라는 인식론적 전망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법학적 분석은 법의 규범성을 넘어, 법에서 비롯되지만 알게 모르게 모든 학문들과 소통하는 사고 범주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식론적 전망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국가와 관련하여, 이 제도적 기초를 인간의 연대에 관한 역사학과 지리학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넓은 초점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가 맡은 강좌의 제목에 연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프랑스의 복지국가 역사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927년에 샤를르 지드(Charles Gide)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한 강의에서 연대라는 개념은 너무 많이 써 먹어서 약발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닌가 자문했습니다. 연대 개념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법적 사실들을 나누어 놓은 경계를 뛰어 넘는 악마 같은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대 개념은 로마

법에서 나와 민법에서 탄생했는데, 나중에 사회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그 후 새로운 의미를 장착하여 사회법에 돌아왔고, 최근에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속으로 들어 왔습니다. 17세기 말에 법률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연대(solidarité)’라는 말은 한동안 ‘견고함(solidité)’과 동의어로 쓰였으며, 이 후자의 단어는 1761년에 출판된 포티에(Pothier)의 『채권 총론(Traité des obligations)』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연대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주는 접착제의 성질과 구성요소를 예단하지 않은 채 그 집단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 개념은 일반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선 개념에도 (그리고 그 현대적 변용인 돌봄 개념에도) 없는 것이며, (신화적 조상을 전제하는) 박애 개념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 개념이, 비록 미묘한 조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불명확한 채로 아무 데서나 ‘지구화(globalisation)’라고 부르는 맥락에서 사회국가의 운명을 연구할 때 대단히 큰 해석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적 맥락은 분명히 사회국가의 위기에 관한, 비록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가장 명백한 이유입니다. 지구화라는 용어는 사실상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가지 현상에 대한 혼동을 초래합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가령 사람들 사이의 기호의 유통에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사라진다는지, 또는 기술 발전에 의하여 사람들이 건강상의 위험 또는 환경상의 위험 앞에 공통으로 노출된다는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 현상들은 불가역적이며, 그것이 노동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것 자체로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인데, 이것은 경제정책적 현상으로서 가역적인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되며 재생 불가능한 물리적 자원에 대한 일시적인 초과 착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일부 논자들이 지구화는 모든 정치적 혹은 법적 고려에서 벗어난 내재적 법칙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현상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프랑스 말은 지구화와 ‘세계화(mondialisation)’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논쟁을 좀 더 엄밀하게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모스가 카오스에 대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드(monde)는 이몽드(immonde)에 대립된다는 차원에서, ‘세계화한다(mondialiser)’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의 물리적 세계를 인간적으로 살 만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구를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화한다는 것은 지구화 과정의 다양한 차원들을 제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화의 기술공학적 차원을 제어한다는 것은 노동의 조직과 관련하여 산업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법형식들을 디지털 혁명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험과 기회 들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구화의 무역적 차원을 제어한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의 인정에 내재하는 연대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역의 국경 개방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질서를 착상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회국가는 여전히 이러한 제어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도에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질문이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론상의 요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국가를 탄생시켰던 서양의 법적 주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레이유 델마스 마르티 교수와 피에르 에티엔느 빌 교수가 훌륭하게 개척한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두 분은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 중국의 제도를 탐구하면서 이를 다른 지평들로, 특히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세계의 지평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개방적 태도는 서양의 사고 범주가 문자적 이성으로서 모든 곳에 적용될 소명을 갖고 있다는 순진한 신념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사회국가의 또 다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기에 빠져 있는 유럽적 기념물의 얼굴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모든 위대한 나라들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추구되어야 할 미래의 계획으로서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론상 요청은 사회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내부적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국가는 산업사회의 자식입니다. 사회국가는 산업사회에 복무하기 위하여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산업사회로부터 두 가지 요소를 물려 받았는데 이것들이 오늘날 사회국가를 심하게 불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 요소는 노동의 사물화는 원칙으로서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시간이나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의 범주를 양적 계산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점입니다. 노동에 지워진 운명을 이해하려면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가 “상상적 사회제도”라고 불렀던 것의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법과 과학과 예술은 한 문명 안에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미지들을 좇아서 나아가고, 이 이미지들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이 나아감의 의미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사회의 상상력은 세상을 고전적 물리 법칙에 완전히 종속되는 하나의 시계로 표상하며, 노동자들을 거대한 생산 기계의 톱니바퀴로 변형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은 테일러의 가르침에 따라 자본주의 땅에서든 공산주의 땅에서든 이른바 ‘과학적’ 노동조직에 구속되었으며, 그 첫 번째 원칙은 노동자들에게 생각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사회는 이처럼 돈을 받고 생각하는 자와 생각이 금지되는 자 사이에 노동의 분업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 같이 공장노동을 경험했던 철학자들이나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 프리츠 랑(Fritz Lang) 같은 예술가들이 이 근본적 부정의를 비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노동의 비인간화는 진보의 몸값으로 간주되었으며, 고용법은 노동자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최소한의 신체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교환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의 현실에 눈 감아 버린 사회국가는 노동의 변화 앞에 대처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국가의 두 번째 장애 요소는 부를 국가 차원에서 재분배하는 의미의 거대한 기계 모델 위에 연대의 개념 자체를 착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국가의 힘이었습니다. 국민연대의 개념은 개인들을 인적 의존

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막대한 자원의 동원 및 위협에 맞선 거대한 응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화와 산업화가 초래한 공동체적 연대의 붕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사회국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익명성은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대관계를 기계적 관료주의가 형성하는 비인격적 관계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주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의 관점에 서는가 아니면 납세자의 관점에 서는가에 따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채무자 없는 채권)이 되기도 하고 뺨 뜯기(채권자 없는 부채)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국가는 개인들을 자급자족의 환상 속에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견고함을 좌우하는 시민적 연대의 다양한 형태들을 훼손하며, 그 결과 자신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시장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4. 사회국가의 미래

미래는 열려 있으며, 사회국가가 어떤 변용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정한 법학적 분석은 사회국가에 제기되는 미해결의 질문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세 가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법치의 위기입니다. 디지털 혁명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신적 대상, 즉 세상을 착상하는 모델은 이제 시계의 기계적 파워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의 계산 능력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힘에 종속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신호를 받고 그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된 존재들로 넘쳐납니다. ‘과학적’ 노동조직을 사회 전체에 확대하려는 의지는 레닌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적 노동조직의 모델은 고전적 물리 법칙이 아니라 정보통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실행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테일러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경영자나 연구자 들에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법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혁명과 같이 가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통치(gouvernement)의 이상을 숫자에 의한 협치(gouvernance)의 이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입니다. 인간의 일이 자동적으로 경영되는 사이버네틱스의 꿈에 관한 가장 최근의 버전은 유로존에서 비준 중에 있는 <경제적 화폐적 연합의 안정성과 협력 및 규율을 위한 조약(Traité pour la stabilité, la coordination et la gouvernance dans l'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입니다. 이 조약의 제3조는 재정 균형의 회복에 관한 목표 수치와 비교하여 중대한 격차가 확인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발령되는 (…)  
교정 메카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행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 신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정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층위의 노동조직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비물질적 기술을 인간이 길들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짓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과 국가는 인간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동일한 사물화 과정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시민적 연대의 발전입니다. 이는 사회국가의 흠결이나 부진에 의하여 촉진됩니다. 역사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시대에는 가족의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우호조약들이 부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령 15세기 랑그독(Languedoc) 지방에서 관찰되는 ‘대가족(frèreche)’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엠마뉴엘 르 루아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보호를 공적인 제도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발달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의 후견적 권위 및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자라나는 좋은 토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연대 또는 지역연대인데,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연대들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시민연대의 발흥은 국가 자신에 의하여 고취되기도 하는데, 국가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종교기구나 자선기구에 위탁할 때 그러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이론화되고 실현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시민연대의 발전은 또한 국가의 사회적 부족함 또는 무관심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교적 연대들이 동원되는 모든 나라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친밀함이 시민연대의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시민연대는 위협에 대처하거나 개인적 집단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로운 연합으로부터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이는 프랑스의 사회모델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유럽법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럽법은 경제활동의 개념을 비영리 제도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 사이에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연대의 발전이 사회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해명되지 아니한 문제입니다. 시민연대의 발전은 국민연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의 힘과 정당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국가의 기초를 허물고 공동체로 움츠러드는 광범위한 흐름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적 정의 개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차 세계대전과 이차 세계대전이 각각 끝날 즈음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목적은 자생적 시장 질서의 옹호자들의 가차없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예크(Friedrich Hayek)에 의하면, 사회적 정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사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관계는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며, (...) 위대한 사회를 직조하는 것은 바로 화폐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또한 인간의 정체성에 근거한 차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직면하였습니다. 이 인격적 정체성은 타자와의 거울 게임을 통해 구축되며 온전히 존재하기 위하여 인정될 것을 상정합니다. 그러므로, 폴 리퀘르(Paul Ricœur)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인정의 욕구 또한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인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나 악셀 호네프트(Axel Honneth)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특정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의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체의 제도화된 정체성의 불안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불안정화는 개인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간주됩니다. 이 후자의 해석은 정체성에 관한 탈근대적 비판의 산물로서, 시민적 지위를 일체의 타율성의 흔적으로부터 정화시켜 “다양하고, 다극화된,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차이들의 장”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시민적 지위의 불안정화는 그들의 직업적 지위의 불안정화와 결합됩니다. 이는 지난 삼십 년 동안 노동법에서 촉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언제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획득된 확실함으로 여기는 탈제도화 기획은 오늘날 부의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하려고 하지 않는 입법자의 귀를 그 만큼 더 쉽게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획은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카스토리아디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의 제도는 불가분적으로 사회적 개인의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타율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을 혼에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재화의 재분배나 정체성의 인정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피해야 할 함정일 것입니다. 법의 무대는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간을 사물의 세계에 기입하는 행위, 즉 노동에게도 자리를 마련합니다. 노동은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부를 창조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현실에 맞서서 이성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정의는 자신의 행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고 노동의 시련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사회국가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노동의 분업을 정의의 영역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며, 그 미래는 노동의 분업을

다시 정의의 영역으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5. 맺음말

총리님,  
 총장님,  
 동료 교수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국가는 ‘스타투스(status)’라는 말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에 따르면 서 있는 것이며 인간 사회를 똑바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는 죽지 않는다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문명들과 서양 문명의 일부 제도에서는 죽지 않고 세대의 계승을 떠받치는 것은 의례입니다. 사실에 관한 연구는 인간이 삶과 죽음에 공통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도들은 카프카가 묘사한 다리와 같습니다. 즉, 사실의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의미의 허공 위로 내뿜은 건축물 말입니다. 이 다리는 인간의 길에 토대를 제공합니다. 제도는 의미를 담지하며,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스스로를 반영하면 그 위에 있던 인간을 심연 속으로 빠뜨립니다. 고대 로마에서 법률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자(pontife)’(오늘날에는 교량건설자라고 부를 겁니다)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던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학자들의 ‘잘난 체하는(pontifier)’ 성마른 성질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최초로 법학 강좌를 개설했던 위그 기중(Hugues Guijon)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황의 권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국가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그러한 비난을 덜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국가의 취약함이 명확한 한 말입니다.